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9. 1.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8.21.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5.8.25.

다. 상정일자 : 제19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5.9.1.)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가정복지과장 김 애 련

가.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관련된 조례의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에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1)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조례 이름 및 본칙의 내용을 정비

- 성평등 → 양성평등
- 2) 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신설(안 제7조제2항제4호)
 - 양성평등정책의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
- 3)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위촉직 직원의 성별 비율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6조제1항)
 -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직원의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4)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안 제17조제3항 및 제30조)
 -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여성주간행사 → 양성평등주간 행사
- 5)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 신설(안 제40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
- 6)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3. 검토보고 (김건재 전문위원)

-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2698호 2014.5.28)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라 할 수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각종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향후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보장과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다해나가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